1.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신규 지정, 신기술(NET)인증제품 통합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제품 및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생략가능한 신기술(NET)인증제품의 범위 조정, 성능인증 운영절차 및 세부 운영사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안 제3조 개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지정

나. 신기술(NET)인증제품 통합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제품 추가(안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개정)

-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다.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신기술(NET)인증제품의 범위 추가 및 생략기준 명확화(안 제8조)

-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을 적합성심사 생략 대상에 포함

- GS인증제품을 포함하거나 이용하여 제조한 하드웨어 제품은 제외
- 성능인증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잔여한 경우에만 적합성심사 생략

라. 시험기관의 범위 정의 및 성능검사성적서 인정범위 개정(안 11조)

마. 영문인증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12조)

바. 적합성심사위원회 소관업무 조정 및 사전질의 근거 마련(안 제17조)

-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심사를 적합성심사위원화 소관으로 규정
- 심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일 전에 사전질의서를 신청업체에 제공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 공장심사평가표 개정(안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개정)

- 전용실시권을 특허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평가표에 반영

아. 기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용어 및 문구 정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중소기업청 고시 제 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제6조제3항 전단 중 "규격을 제시하여야"를 "규격, 제11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성능인증 신청자는 공장 소재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성능검사"를 "성능검사(성능검사성적서 대체 가능)"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험연구원"을 각각 "시험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0조제②항"을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

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성능인증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상 잔여한 경우에 한하여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제품(NEP)으로 인증한 제품
2.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S)(단, 품질인증제품(GS)을 포함하거나 이용하여 제조한 하드웨어 제품은 제외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성능검사성적서를 근거로 성능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능검사성적서의 유효기간은 성능검사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 신청제품의 성능 구현방법 및 재질 등이 동일하고 규격이 다를 경우 규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능 변화의 차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현방법 및 재질 등이 동일한 규격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성능인증을 발급받은 업체가 영문인증서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5개 분야로 통합하여 지역별로 구성하며, 분야별로 소관 지방중소기업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계・금속 분야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2. 전기・전자 분야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3. 토목・건축 분야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4. 화공・섬유 분야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5. 생활용품・기타 분야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심사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3. 그 밖에 성능인증을 위한 심사・검사 및 우선구매 요청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⑥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심사위원에게 신청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적합성심사를 위한 사전질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이 사전질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사전질의서를 신청인에게 보내 심사를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다른 시험연구원"을 "제11조제2항의 시험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해당 기업 소재지"를 "제6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에는"을 "제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시험연구원"을 "시험기관"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재검토 기간)"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7년 3월 31일"을 "2018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생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신청□접수한 성능인증의 적합성심사 생략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공장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신청□접수한 성능인증의 공장심사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영 제13조제5호에서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제3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u>9.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u>
제6조(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접수 등) ①・② (생　략)	제6조(성능인증 대상 및 신청・접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구매 공공기관이 요구한 제품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u>규격을 제시하여야</u> 한다. 국민을 위해 안전・품질・환경・보건 분야에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	③ -- <u>규격, 제11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성적서를 제출하</u>

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격(형식승인 등)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내용과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여야 -. ――.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성능인증 신청자는 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성능인증제품의 심사방법)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제8조부터 제11조 까지의 적합성심사, 공공기관의 규격확	제7조(성능인증제품의 심사방법) ① ――

인, 공장심사,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성능인증제품으로 인증한다.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의 공장심사 또는 성능검사는 법 제15조제6항에 의한 시험연구원이 대행할 수 있다.	———————————————— ———————————————— ———— 성능검사(성능검사성적서 대체 가능)———————— ———————————————— ———————————————— ———————————————— ————. ———————————————— ———————————————— ———————————————— ———————————————— ———————————————— ——.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제품의 심사를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 ———————————————— ———————————————— ———————————————— ———————————————— —.
1.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자가 시험연구원이 발급한 성능인증성적서를 첨부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1. ———————————————— ———————————————— ———— 시험기관———————— ———————————————— ———————————————— ————————————

2.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성능인증을 요청한 경우로써, 중소기업자가 시험연구원이 발급한 성능인증성적서를 첨부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	2. ———— 시험기관————
③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최초 성능인증 적용기술과 동일한 기술로서 규격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적합성심사, 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성능검사성적서 대체 가능) 실시 후 규격을 추가 기재하여 최초 성능인증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다만, 공장심사의 경우 시행세칙 제10조제②항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며, 설비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③ ———— 제10조제2항————

	————————————————————————.
제8조(성능인증 적합성심사)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 신청기업의 관계자를 참여시켜 별표 4의 성능인증 적합성심사표에 따라 기술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제17조에 의한 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적합성심사위원회의 부적합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그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성능인증 적합성심사) ① ——. ———————————————————————————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성능인증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상 잔여한 경우에 한하여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제품(NEP)으로 인증한 제품 2.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S)(단, 품질인증제품(GS)을 포함하거나 이용하여 제조한 하드웨어 제품은 제외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1조(성능검사 등) ① (생 략)	제11조(성능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다른 시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한국인

험연구원 등에서 실시한 성능검사 결과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연구원 등의 성능검사성적서 유효기간은 성능검사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성능검사성적서를 근거로 성능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능검사성적서의 유효기간은 성능검사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신청제품의 성능 구현방법 및 재질 등이 동일하고 규격이 다를 경우 규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능 변화의 차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현방법 및 재질 등이 동일한 규격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성능인증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 (생 략)	제12조(성능인증제품 인증서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의해 성능인증을 발급받은 업체가 영문인증서를 신청할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적합성심사위원회) ①·② (생 략)	제17조(적합성심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기계·금속, 전기·전자, 토목·건축, 화공·섬	③ 위원회는 심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5개 분야로 통합

유, 생활용품・기타분야로 구성되며, 심사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위해 지역별로 통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하여 지역별로 구성하며, 분야별로 소관 지방중소기업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계・금속 분야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2. 전기・전자 분야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3. 토목・건축 분야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4. 화공・섬유 분야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5. 생활용품・기타 분야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와 성능인증을 위한 심사・검사 및 우선구매 요청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등 지방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심사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3. 그 밖에 성능인증을 위한 심사・검사 및 우선구매 요청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신 설>	⑥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심사위원에게 신청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적합성심사를 위한 사전질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이 사전질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사전질의서를 신청인에게 보내 심사를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등) ① (생 략)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능검사시 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사유 발생 이후에 다른 시험연구원 등이 발급한 성능검사성적서가 있을 경우 그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1조(성능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1조제2항의 시험기관 ──────────────.
제22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제22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만료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그 사실을 유효기간 연장신청기한 10일 전까지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성능인증기업이 별지 제7호서식의 성능인증 연장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증기간 동안의 공공기관 판매실적을 작성하여 인증기간 만료 90일 전에 해당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의한 적합성 심사 생략 등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일 전으로 하며 유효기간 연장 시작일은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 ——————————————— ——————————————— ——————————————— ———————————————. ——————————————— ——————————————— ——————————————— ——————————————— ——————————————— ——————————————— ——————————————— ——————————————— ——————— 제6조 제6항에 따른 ——————— ——————————————— ——————————————— ———————————————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① 연장신청은 제7조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성능인증 적합성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성능인증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① ──── 제8조제2항에 따라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사후관리) 지방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 필요한 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성능검사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시험 불가능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연구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수수료는 해당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제24조(사후관리) ────. ──── 시험기관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9조(재검토 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재검토 기한) ———————————————————————————————— 2018년 3월 31일————————.
[별표 1] 성능인증 대상제품	[별표 1] 성능인증 대상제품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전력신기술지정 제품	<삭　제> (제13호로 이관)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1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신기술	13.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

(NET)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의 장이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임을 확인한 제품
14. ~ 22. (생 략)	14. ~ 22. (현행과 같음)
[별표 2]	[별표 2]
1. 공장심사평가기준	1. 공장심사평가기준

항목	평가지표		평점	점수
경영상태 (15)	(생략)		(생략)	
기술개발 여선(40)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생략)	
	○ 기술개발 인력보유		(생략)	
	○ R&D 비율		(생략)	
	○ 신기술 인증 보유	(생략)	(생략)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보유	(생략)	
생산 및 사후관리 (45)	(생략)		(생략)	
가점(4)	(생략)		(생략)	

항목	평가지표		평점	점수
경영상태 (1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술개발 여선(40)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현행과 같음)	
	○ 기술개발 인력보유		(현행과 같음)	
	○ R&D 비율		(현행과 같음)	
	○ 신기술 인증 보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보유	(현행과 같음)	
생산 및 사후관리 (4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점(4)	(현행과 같음)		(생략)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별지 12호 서식]

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Quality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Company :

President :

Address :

Product :

Valid Thru :

This certification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Act on Facilita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Manufactured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Administrator

Small and Midium Business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